공고 제 28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18일

신길제6동장 원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걸	최 *걸 1991-10-02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9길 (신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5-09

직 권 조 치 공 고 자 명 부

행정기관 신길제6동

출력일자 2022년 05월 18일

일련번호	성명 주민등록번호	직권조치일 직권조치내용	주소
1	최 명걸 911002-1******	2022-05-0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9길 8 602호 (신길동,정진아트빌)